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0
----------	------

제출연월일 : 2018. 10. 5.

제 출 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2017. 12.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음식판매자동차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영업장소 지정신청 등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현행)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공용재산'으로 범위 규정
- 영업장소별 중복 표현되는 첨부서류를 단순 명료하게 표기함

다.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4조)

- 영업자가 구청장에게 직접 영업장소를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근거법규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없음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18. 8. 27. ~ 2018. 9. 18.(의견없음)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 제9호”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하 한다) 별표15의2”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에서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제한할 수 있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 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 허가, 승인 등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장소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6 (제210회-복지건설위제1차부록)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 사항	영업의 종류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신청 장소 []사유지 []기타 ()
	소재지 및 면적 (㎡)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 받아야 한다.

제출서류	1. 지정 신청 장소 내 음식판매자동차 배치도(사진 및 정확한 위치 표시) 1부. 2. 영업장소 사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입지검토: 관계 기관·부서, 처리기관: 식품영업신고 담당부서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p> <p>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p> <p>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p>	<p><u>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 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15의2-----</p> <p>제2조(영업장소)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p> <p>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에 따른 시설</p> <p>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p> <p>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p>

현행	개정안
<p><u>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u> <u>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승인에 관한 서류</u></p> <p>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p> <p>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승인 등에 관한 서류</p> <p>4. 「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문화의 거리, 「울산광역시 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물놀이장, 「울산광</p>	<p><u>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u></p> <p>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 재산</p> <p>② <u>구청장은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에서 일정구역을 허용 장소로 제한할 수 있다.</u></p>

현행	개정안
<p><u>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u>」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u>울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u>」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점포·임시시장·상점가, 「<u>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u>」 제2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자전거대여소, 「<u>울산광역시 중구 캠핑장 관리·운영조례</u>」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 「<u>울산광역시 중구 문화의전당 설치 및 운영조례</u>」 제3조에 따른 시설 - 시설의 사용 계약·승인에 관한 서류</p> <p>5. 그 밖에 구청장은 음식판매자 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p>

현행	개정안
<p data-bbox="204 1375 363 1413"><신 설></p>	<p data-bbox="839 304 1417 479"><u>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data-bbox="839 506 1417 1350" style="list-style-type: none"><li data-bbox="839 506 1417 947">1. <u>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u><li data-bbox="839 974 1417 1350">2. <u>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 허가, 승인 등에 관한 서류</u> <p data-bbox="804 1375 1417 1413"><u>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 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장소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39 1778 1417 1953"><u>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p> <p data-bbox="839 1980 1417 2018"><u>③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영업</u></p>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11.8.19., 2012.1.17., 2012.5.31., 2014.8.18., 2014.10.13., 2015.8.18., 2015.12.31., 2017.12.29.>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별표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 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 1) 시·도지사
 - 2) 구청장·군수·구청장
 -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 7. 고속국도 줄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줄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줄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줄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구청장·광역구청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구청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 10.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8A울산중구033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환경위생과	
	담당자명	문형순	전화번호 052-290--373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8년 8월 27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환경위생과)	본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식품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안 제2조 및 제3조), 식품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 절차 마련(안 제4조) 등에 대한 내용임.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울산광역시 중구 식품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8년 08월 28일			
울산광역시중구분석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류지숙/052-290-4912)			
환경위생과장 귀하			